

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06년 2월 27일
경기도지사
2. 회 부 일 자 : 2006년 3월 3일
3. 상 정 일 자 : 제209회 임시회
제1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(2006. 3. 13)
4. 심 사 과 정 :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원안가결

II. 제안설명의 요지

1. 제안 설명자
 - 환경국장 : 유재우

2. 제안이유

- 「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」 개정('05. 12. 9)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지역에 대하여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지역을 추가하고자 함.

III. 주요골자

- 가.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이 종전의 대기환경 규제지역(15개 지역)외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으로 확대되어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서 위임된 시행지역의 범위에 용인시를 추가로 지정코자 함.(안 제2조).

IV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이 종전 대기환경 규제지역 외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동 조례중 시행지역의 범위에 “용인시”를 추가로 지정하는 사항과 아울러 “경기도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기준('05. 1. 1)”에 의거 용어를 정리하는 것임.
-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V. 질의·답변 요지 : 생략

VI. 토론요지 : 없음

V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경기도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조례”를 “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대기환경보전법”을 “「대기환경보전법」”으로 하고, 제2조제1항 중 “자동차관리법”을 “「자동차관리법」”으로, “건설기계관리법”을 “「건설기계관리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안산시 다음에 “용인시”를 삽입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2조제2항의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